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석유정제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심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심사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 (제2-2-2조)

- 안전성향상계획을 변경·작성하여야 하는 설비의 주요부분 변경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제출대상과 부합화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인정기준 마련(제10장)

- 인정되는 용기검사에 대한 ‘외국 인정기준 및 검사기관’ 명시
- 반송기간 추가연장(1년→2년) 조건인 수입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 및 제출 방법 등 규정

기타 인용조문 오탈자 정비(제8-1-1조 및 제8-1-2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령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
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8-1-1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8-1-2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DOT 인증기관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준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유럽의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기준
고압가스보안협회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1조 (생략)</p> <p>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u>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u></p> <p>나. <u>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u></p>	<p>제2-2-1조 (현행과 같음)</p> <p>제2-2-2조 ----- ----- --</p> <p>1. ----- ----- ----- .</p> <p>가. <u>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u></p> <p>나. <u>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u></p>

다.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제8-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별표 1 제2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영별표 1 제20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8-1-1조-----
--- 제22호-----

제8-1-2조-----
--- 제22호-----

정」에 적합한 냉매회수기기 안
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신 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

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

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

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

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

국가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

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
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
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
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
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
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u>공인검사기관</u>	<u>인정기준</u>
<u>DOT 인증기관</u>	<u>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준</u>
<u>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 ified Body)</u>	<u>유럽의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기준</u>
<u>고압가스보안협회</u>	<u>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u>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
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

신 청 인	① 상호(성명)		② 연락처	
	③ 소재지			
용기정보	④ 제조자		⑤ 제조국	
	⑥ 제조기준		⑦ 검사기관	
	⑧ 수입일			
사 용 자 또는 보관장소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관리책임자		⑫ 연락처	
	⑬ 소재지			
⑭ 검사생략 기간 연장사유				
⑮ 용기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용접용기 <input type="checkbox"/> 이음매 없는 용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⑯ 가스명 및 충전량 (별첨 가능)	가스명	용기의 용량	수량	
		(kg, m ³)	개	
⑰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별첨 가능)		(kg, m ³)	개	
위 신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1조제2호 관련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검사기관)				

<신 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